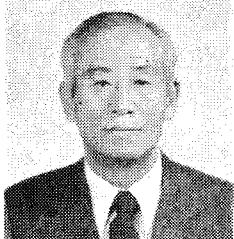


현집유제도의 개선방향

現 集 乳 制 度 改 善 方 向



柳允洙
(본회 회장)

본고는 서울우유협동조합 간행 월간『서울우유』에 특집기사로 게재한 내용 그대로를 전국 낙농가에게 알리고자 소개하는 것임…편집자

우리나라 낙농은 그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며 73년 기준으로 83년까지 10년동안의 발전 과정을 수치적으로 살펴 볼 때 표 1, 2,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이적인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낙농기반조성과 낙농경영의 합리화 방안, 나아가서 집유, 검사, 수급조절등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발전 초보단계 그대로의 답보상태로서 사회여건 변화 즉 고도

표 1. 유우사양호수와 두수

연도별	사양호수	사육두수
'73	5,488호	52,424두
84. 6. 1.	34,099	301,078
성장률	621%	574%

자료 : 낙농관계자료 가축통계조사결과 농수산부 1983

표 2. 우유생산

연도별	우유생산량	소비량	1인당소비량	두당산유량
'73	101,819M/T	104,082 M/T	3.2kg	2,064 kg
'83	712,206	728,575	18.2	2,592
성장율	699%	700%	568%	125%

* 두당산유량은 우유생산량을 유효총두수로 나눈 수치임.

우유생산량은 남유량 기준임(자가소비 불합격제외)

자료 : 낙농관계자료, 농수산부 1983, 유가공협회 우유 여름호 '1984

의 경제성장에 부응되는 낙농산업의 제도적 장

표 3. 우유품목별 소비 신장률

〈단위 : M/T〉

품목	'73	'83	신장률 %
백색우유	55,670	448,216	805
가공유	'76.- 35,415	78,768	222
발효유	'75- 8,473	109,977	1,297
전지분유	647	8,917	1,378
탈지분유	44	3,864	8,781
조제분유	5,566	18,881	339
연유	1,224	1,263	103
버터	79	1,635	2,069
치즈	'75- 22	182	827
아이스크림	1,285	25,472	1,982

자료 : 우유, 유가공협회간 여름호 1984.

치가 미흡함은 우리 낙농가만이 아니고 유가공업체나 정부당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할일과 유가공업체가 할일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소비없는 생산이 있을 수 없고 소비자가 없는 기업은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 이용의 효율면에서 볼 때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한 산야지는 초자원으로서 활용이 우선이며 초자원은 대가축 즉 소사육이 수반되어져야만 한다. 소는 우리에게 제 2의 식량인 젖과 고기를 주며 국토보존의

일의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손과 지혜로서 구조적 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낙농산업을 발전 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우유 집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개선방향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낙농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은 생략함)

1. 집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 집유제도는 1976년 11월에 원유가격조정과 함께 원유 유통질서 유지대책을 농수산부가 각 도지사와 집유체 및 유가공업체에 통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우리 낙농가들이 영세하여 유우입식에 따른 유가공업체로 부터의 자금지원도 있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낙농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낙농식품의 소비성장 등 생산자와 가공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제도의 지속은 불합리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첫째로: 각 집유업체간의 집유노선의 경합이나 중복에서 오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해당 집유업체에서의 집유비용의 과중은 다시 말하면 동일 노선에 두개 이상의 집유업체가 있으므로 해서 운반차량, 유류, 인건비 등의 낭비를 부인 할 수 없으며 이의 원인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업체가 소를 수입 입식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심한 곳은 부락단위를 이치하고라도 극히 적기는 하지만 개인 농가가 두개의 유업체에 납유하는 현상도 빚고 있다.

둘째로: 우유의 성수기나 부족현상이 예견되면 업체간에 집유선의 쟁탈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낙농가들에게 공연한 의아심을 갖게하여 원유수급 유통질서에 문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집유선의 경합이나 노선의 중복, 심지어 생활권을 도외시한 장거리의 집유에 따른 장시간의 소요는 우유의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완전식품으로서 오늘의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하고 질이 좋은 우유를 요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집유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네째로: 집유업체와 생산자간에 계량이나 검사면에서 종종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유가공업체는 기업으로서 이익추구가 목적이고 생산자는 보다 공정을 바라고 있으나 계량 검사면에서 제3자의 개입이 없는데서 오는 현상으로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현집유체의 다원화는 어떤 면에서나 낙농발전을 본의 아니게 저연시키는 폐단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낙농가들에게 우유의 신선도와 산폐, 이상유등의 방제를 위한 냉각기 시설의 설치에 적극성의 결여와 기업체로서 집유차의 현대화등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집유체가 생산자단체인 서울우유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낙농에 선구적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서울우유조합원의 냉각기 보유율이 '83년 말 기준으로 84.6% 84년 6월말 99.7%나 보급되고 있으며 집유차의 탱크로리화와 이것이 이동집유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집유거리의 단축으로 우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이와같은 일이 타 유가공업체에 영향을 주어 기기의 선진화를 도모토록 한 산예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현집유제도 상의 문제점을 예거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유가공업체가 낙농발전에 기여한 공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낙농식품개발에의 공헌으로 우유소비 신장을 도모한데 대하여는 낙농가들도 감사드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발전하고 보다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궤도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것으로 낙농분야 역시 제도상의 문제들을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도래 하였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네개 기관이 서로가 다르면서 합리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 생산농가는 생산된 산물을 공정하게 거래되 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보다 신선하고 맛있고 질이 좋은 우유의 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유가공업체는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유구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같이 상통하면서도 상반되는 일들을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이루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현시점에서 우유의 집유나 검사, 공급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개선방향

가. 집유제도

첫째로: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유가공업체간이나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집유하고 있는 집유구역을 전면재조정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도(道) 단위로 조정하는 동시에 교통로선을 고려하여 집유거리의 최단거리화로 시간과 경비 인건비의 낭비를 막고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생산자단체가 집유하고 현재 시설이나 여력이 충분치 못한 곳에서는 현유가공업체를 잠정적으로 집유체로 지정하고 한편 집유구역의 조정에서 융통성있게 집유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도와 도간에도 집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집유체 지정은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체를 우선으로 지정하되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유가공업체로 지정하되 각도에 1~2개의 집유체만을 지정토록 하고(예로서 서울경기와 부산경남지역은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부산경남우유조합은 현재 집유가 가능하다고 봄)

종국적으로는 생산자단체가 집유능력을 갖출수 있을시는 집유업무를 일원화하여 생산단체가 하도록 제도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집유기기나 운반차량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을 사용하되 냉각기, 계기, 탱크로리 등 우유의 품질 개선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유업체에서 갖고 있는 필요한 시설과 기기는 상호 협의와 계약에 의거 새로운 집유업체가 매입이나 임대 사용토록 한다.

넷째로: 현재 집유체와 낙농가들과의 약속이나 임차 또는 편의제공 조건 등은 새로운 집유체가 협의에 의해 인수이행토록하여 생산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일차적으로 현집유소나 유가공공장 중심으로 집유를 하되 집유기자재가 완비된 후에는 현집유소 수를 줄이고 탱크로리차에 의한 유가공공장에 직결시키도록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탱크로리로써 간이 집유장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여섯째로: 새로 집유를 맡은 업체는 다음과 같은 낙농가의 지도사업을 하도록 하며 현집유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인원을 상호협의에 의해 승계토록 한다.

- 1) 구매사업
- 2) 진료 및 인공수정사업
- 3) 유질향상사업(기기의 개선)
- 4) 낙농기술과 경영지도사업

일곱째로: 집유업체와 원유소요자(유가공업체)간에는 원유의 원활한 수급과 공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수도 장소, 대금지불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여덟째로: 집유비는 정부가 정한 농가의 우유수취가격에 더하여 원유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나. 검사제도

집유문제는 국가적 차원과 소비자측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검사문제는 낙농가와 직접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문제로서 (집유나 검사 모두 낙농가나 소비자와 결부되지 만) 계량과 유질(유지방률, 무지고형분, 세균수 등) 그리고 이상유 등의 판별은 쌍방 당사자가 아닌 제삼기관이 맡아서 하여야 순리인 것으로 본다.

첫째로: 원유의 질과 양의 검사는 정부 또는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유검사 업체를 지정하며 원유사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담당토록 하여도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로: 원유검사업체는 검사담당기구의 설치와 검사규정, 방법의 제정, 검사원의 채용, 교육, 훈련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연구와 조사사업을 하도록 한다.

셋째로: 원유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정부방침에 따르되 질과 위생도를 구분하여 1급,

2 급과 등외로 나누고 등급간의 가격의 차등을 두도록 하면 빠른 기간내에 발전된다고 본다.

네째로 : 검사기기와 검사원은 현유업체와 새로 생길 집유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우선 승계 한다.

다섯째로 : 검사비용은 정부가 정한 농가 우유 수취가격에 더하여 원유수요자가 부담토록 한다.

다. 원유수급 조정

원유의 원활한 수급과 조정을 위한 조정기구로서는 유가공협회가 담당토록 하며 공급에 관한 요강 등은 집유업체,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원유사용 유가공업체와의 협의로 작성시행도록 한다.

라. 집유비 및 검사비 산정

집유비와 검사비의 산정은 유가공협회, 집유업체, 검사업체,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집유비의 산정은 가능한한 집유구역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원유의 인수도가격

원유의 인수도가격에는 정부가 정한 농가수

취가격에 집유비와 검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하고 원유수요자가 부담토록 한다(현행제도와 같음)

이상으로 현행 집유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하였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단체가 수용태세를 갖추지도 않고 집유를 맡겠다던가 유가공업체 자체가 원유검사를 하겠다던가 또는 집유업체가 자신이 검사를 맡아야겠다는 등의 일방 통행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사회는 내가 살자면 남도 살아야 하며 남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섭리를 어겨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더욱기 모든 산업은 전문화 되면서 더욱 전문세분화되어가고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전속에 유독 우리 낙농분야만이 구태의 연한 제도속에서 발전을 기하기는 어렵다. 서로가 공평하게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유, 검사, 공급의 기능별로 나누어져 조화를 이루어야 낙농은 발전하고 소비자도 뒤따라 올 것이다

일의 시작은 빼를수록 좋다. 오늘의 시작이 10년을 앞서고 내일로 미루면 10년이 뒤진다. 지금이 바로 집유제도를 재검토 정립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밝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보다 살기 좋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부정심리 추방에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거리·교통질서, 행락질서, 경기장질서, 기타 공공질서 등 4대 질서를 확립하여 질서의 생활화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돈으로 인사하는 관습, 금전매수 등 음성적 금전거래 풍토, 청탁풍조, 공사(公私)에 있어 무분별 행위 등을 뿐리뽑아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정부는 경제정책의 신뢰회복, 기업은 전전기업 풍토조성, 국민은 투기, 사재기 안하기와 철약·저축정신 기르기로 전전생활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가소화 조섬유(DCF=Digestible Crude Fiber)◇

가소화란 소화흡수되어 진다는 뜻이고, 조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셀루로즈나 리그닌을 포함하고 있으나 리그닌은 불소화물이므로 DCF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양소로서는 에너지(열량)속에 들어간다. 가축은 소화하는 셀루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아 대부분이 반추동물의 제1위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작산 등의 저급 지방산이 되어 제1위벽으로부터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일부는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 흡수된다. 닭이나 돼지에서 거이 이용할 수 없고 반추동물에서만 귀중한 에너지원이 된다.